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민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20.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20. 11. 1.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은 같은 날 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乙 또는 丙이 甲에게 추가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다. 甲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 5. 1. 丁에게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丁은 위 채권양수 당시 甲과 乙 사이에 채권양도금지 합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이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양도하였으므로

3,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5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丙에 대하여 양수채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丙은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 압류가 제한되므로 乙이 甲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심리결과 甲이 양수한 乙의 채권은 丙에 대한 임금채권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甲의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20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丁은 2021. 8. 1. 戊에게 위 양수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戊는 乙을 상대로 양수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丁, 戊에게로의 각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戊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다면 이를 서술하고, 없다면 (즉 乙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일찍이 처와 사별하고 홀어머니 乙을

모시고 살면서 자녀 A, B, C를 홀로 키우다가 丙과 재혼하였는데, 丙이 D를 임신한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甲이 사망하자, 혼자서 D를 키울 자신이 없던 丙은 D를 낙태하고 말았다. A는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A에게는 처 E와 자녀 F가 있다.

※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1. 위 사례에서 甲의 상속인은 누구인지 논하시오. [2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사망하기 5년 전, 장래 B의 결혼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B 앞으로 OO투자신탁주식회사에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장기공사채 2구좌 합계 1억 원을 예탁하여 두었고, 甲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거주 중이던 주택을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소극재산으로 차용금채무 등 합계 2억 6천만 원이다. 이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상속액 포함)를 논하시오. [20점]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사망 당시 丁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甲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丁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B가 모두 인수하기로 한다.”고 협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丁은 B를 상대로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명시하고, 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되는 금액을 특정할 것)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형 법

【문 1】

甲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乙(女)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주어 마시게 한 다음 乙(女)이 잠이 들자 간음하였다.

乙(女)은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후 乙(女)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다음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甲은 자기가 몸쓸 짓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丙(女)의 용모에 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양팔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 하였으나, 丙(女)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돌아오면서 자신의 피부가 문제였다고 생각한 甲은 이전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丁이 운영하는 ‘B스포츠피부’로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대기하는 손님이 많아서 결국 피부 마사지를 받지 못하였다. ‘B스포츠피부’를 나오면서 여자친구 A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난 甲은 영업점 내에 있는 丁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여자친구 A와 1~2시간 가량 통화를 한 후 丁에게 알리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위 ‘B스포츠피부’ 정문 옆에 있는 화분에 놓아두고 그대로 가

버렸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5점]
(특별법 위반죄는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문 2】

甲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마음을 먹었다. 甲은 2016. 6.경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이를 위해 회사 정관을 작성·제출하였고, 주식 발행·인수 절차와 관련하여 주금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 당시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사람으로부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하였다.

검사는 甲이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회사 설립 내용을 등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甲에게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5점]

【문 3】

甲은 2015년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이모인 A 명의로 하였다. 乙은 2017. 10.경 甲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그 소송계속 중인 2018. 4. 30. 위 편의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8. 5. 6. 처인 B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에 乙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대법

원 판례에 비추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0점]

형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A는 농촌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S 정유회사를 통해 공급받은 유류를 면세유구입카드를 소지한 영세 농민에게 면세유로 공급하고,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해당 공급량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세 등 세금을 환급받아 정상유와 면세유의 차액 상당액을 정산하는 공급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화물차를 운행하는 B는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님에도 A와의 친분을 통해 2019. 2. 1.부터 2019. 4. 1. 사이에 A가 위탁보관 중이던 타인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A로부터 몇 차례 면세유를 정상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았고, A는 그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았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1. <추가된 사실관계> 사법경찰관 P는 A가 B와의 공모관계에서 면세유를 본래와 다른 용도로 부정유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A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스마트폰에 ‘면세유’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문자메시지, 사진 및 문서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사법경찰관 P가 A의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0점]

나. 영장집행 단계에서 사법경찰관 P가 A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첫 페이지 범죄사실 부분만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영장 부분을 A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영장 제시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만약 이후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참여한 A의 변호인이 위 영장의 나머지 부분까지 확인한 경우에 압수·수색 처분의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다. 사법경찰관 P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A의 스마트폰에서 출력한 전자정보를 통해 A가 2019. 3. 무렵 공장운영자 C에게도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위 전자정보를 A와 C의 공모관계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추가 범행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A는 2020. 1. 20. “농업 용도에 사용할 면세유를 B에게 다른 용도로 판매하고 조세를 환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고, 견해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가. 사법경찰관 P는 공소제기에 앞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소속 경찰청장 명의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발의뢰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고발장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 대한 피의자조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7점]

나. 공판절차에서 A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1심 법원은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

이 없는 채로 제기된 공소의 효력에 대하여 심리하고자 한다. 1심 법원의 적정한 처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다. 만약 1심 계속 중에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논하시오. [5점]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들의 파묘를 조건으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X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 부동산 지상에는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들 외에, 乙 종중의 종중원 丙이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분묘들도 설치되어 있었다(아래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X 부동산 지상의 분묘들이 그대로 존재하자 乙 종중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분묘굴이 및 각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인 甲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乙 종중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丙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乙 종중이 甲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종중총회는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고, 그 밖에 종중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乙 종중과 甲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甲은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甲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乙 종중에 대하여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의 굴이 및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1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은 乙 종중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甲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丙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 종중이 Y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취지는 乙 종중이 甲에게 Y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Y 부동산은 소송계속 중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甲은 청구취지기재를 변경하거나 법원에 새로운 토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甲의 청구취지 그대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경정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甲은 이후 법원에 경정대상판결 주문 중 부동산 표시를 분할된 토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을 하면서, 분할된 내용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위 경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경우 甲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위 결

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 2】

[사실관계]

甲은 2016. 5. 30.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1. 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乙은 2016. 12. 14.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7. 13.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제1차 변론기일에 甲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乙 및 乙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7. 8. 1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마찬가지로 甲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乙 및 乙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甲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소송대리인은 2017. 9. 7. 항소심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7. 9. 8.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2017. 9. 28.로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는 甲과 甲의 소송대리인, 乙이 모두 불출석하였다.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아래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 이유 내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이 어떠한 법적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